

이민자 생활법률특강

한국에서 일해요!

이민자 생활법률특강

한국에서 일해요!



이민자 생활법률특강

한국에서 일해요!

인쇄 2023년 1월 **발행** 2023년 1월
발행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
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<http://www.moj.go.kr> 02-2110-3314
집필진 최보선(한국법교육센터 연구원)
유다혜(한국법교육센터 법교육전문강사)
감수 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
윤익법률사무소 변호사 경규연
디자인·인쇄 디자인페이지플러스(주) 02-2285-5278

Contents

PART 1	근로계약	02
	근로자란? 근로계약서 더 알아보기 근로계약서의 내용	
PART 2	고용허가제	04
	고용허가제란? 근로 기간 사업장 변경	
PART 3	근로시간과 휴식	05
	근로시간 휴일 휴가 더 알아보기 여성 근로자의 보호	
PART 4	임금 체불 (월급을 못 받았을 때)	07
	임금이란? 임금 체불 청구 기한 임금 체불 신고 방법	
PART 5	산업재해보상보험 (일하다가 다쳤을 때)	08
	산업재해보상보험(산재보험)이란? 산재보험 신청 방법	
PART 6	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	09

02
PART

고용허가제

✎ 고용허가제란?

-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를 원하는 기업이 정부(고용노동부)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.

✎ 근로 기간

-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 내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.
- 사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고용이 가능합니다.
 - 재고용은 1회에 한하여 1년 10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.

✎ 사업장 변경

-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. 그러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이 허용됩니다.

 더 알아보기 **사업장 변경 사유**

-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한 경우
- 2 사용자의 근로 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가 있는 경우
- 3 사업장 휴업·폐업·파산



- 사업장 변경 횟수는 최초 3년의 취업기간 중 3회까지 가능합니다. 재고용의 경우에는 1년 10개월의 취업기간 중 2회까지 가능합니다.
 - 단, 사업장 변경 사유 ②, ③에 해당할 경우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
03
PART

근로시간과 휴식

✎ 근로시간

- 법정근로시간은 1일에 8시간, 1주일에 40시간입니다.
-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쉬는시간 30분 이상, 근로시간 8시간에 쉬는시간 1시간 이상을 줘야합니다.

✎ 휴일

- 유급휴일은 일하지 않고 쉬지만 임금이 주어지는 날입니다.
 - 주휴일은 1주일 중에서 1일씩 쉬는 유급휴일입니다. 보통 일요일이지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일요일 외의 날도 가능합니다.
 -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에 쉬는 유급휴일입니다.

✎ 휴가

- 연차유급휴가는 1년에 15일~25일씩 쉬지만 임금이 주어지는 날입니다.
 -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%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만 받을 수 있습니다.
 - 1년에 80%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 휴가를 줘야 합니다. 그 뒤로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25일까지 가능합니다.



♣ 생리 휴가

- 여성 근로자는 한달에 1일의 생리 휴가(무급 휴가)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♣ 임신부의 보호

- 임신부 근로자가 요구하면 쉬운 종류의 근로로 바뀌어야 합니다.
- 임신부는 원칙상 시간 외 근무, 야간(22시~06시) 및 휴일에 근로가 금지됩니다.
-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(단,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 가능)

♣ 출산전후휴가

-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에 90일(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)의 출산전후휴가를 줘야합니다.

♣ 육아휴직(남녀 근로자)

-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 당 1년 이내입니다.



임금 체불 (월급을 못 받았을 때)

✎ 임금이란?

- 임금은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. (예 : 월급, 주급, 일급 등)
- 최저임금 : 시간당 9,620원 (2023년 기준)

✎ 임금 체불 청구 기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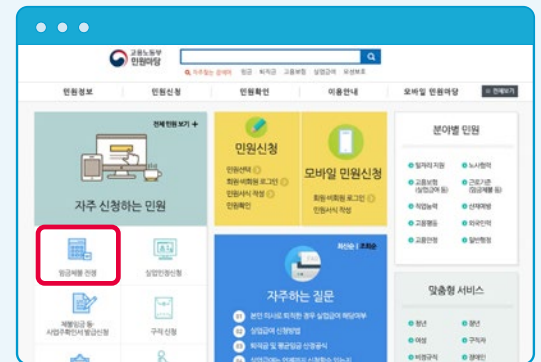
- 임금을 못받은 경우에는 3년이 되기 전까지만 청구가 가능합니다.

✎ 임금 체불 신고 방법

고용노동부(☎1350)에 진정서 제출



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 신고 (<https://minwon.moel.go.kr/>)



산업재해보상보험 (일하다가 다쳤을 때)

산업재해보상보험(산재보험)이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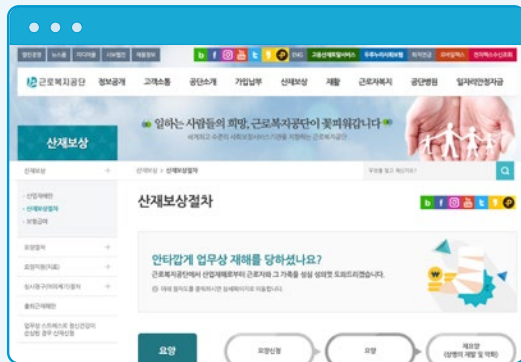
-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일하다가 부상, 질병, 사망 등 피해를 당했을 때 보상해주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.
- 산재보험의 종류 : 요양급여(치료비, 검사비 등 병원비), 휴업급여, 장해급여, 상병보상연금, 간병급여, 유족급여, 장의비, 직업재활급여



산재보험 신청 방법

근로복지공단(☎1588-0075)에 신청

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
(www.kcomwel.or.kr) 접속 →
산재보상 → 산재보상절차 →
산재보상신청바로가기



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

고용노동부(☎1350, www.moel.go.kr)

- 체불 임금 받을 수 있도록 요청(진정), 사용자 처벌 요구(고소)
- 이용 시간 : 평일 09:00~18:00 전화 상담

근로복지공단(☎1588-0075, www.kcomwel.or.kr)

-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
- 이용 시간 : 평일 08:30~18:00 전화 상담

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(☎1644-0644, http://k.migrantok.org)

- 임금 체불, 사업장 변경, 산업재해 보상 등 상담
- 지원 언어 : 몽골어, 파키스탄어, 스리랑카어, 태국어, 베트남어, 우즈베키스탄어, 미얀마어, 캄보디아어, 중국어 등 9개 언어
- 이용 시간 : 평일 09:00~18:00 전화 상담

외국인종합안내센터(☎1345)

-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모국어로 출입국·체류 상담 서비스와 생활정보 제공
- 지원 언어 : 한국어, 중국어, 영어, 베트남어, 타이어, 일본어, 몽골어, 인도네시아어, 프랑스어, 방글라데시어, 파키스탄어, 러시아어, 네팔어, 캄보디아어, 미얀마어, 독일어, 스페인어, 필리핀어, 아랍어, 스리랑카어 등 20개 언어
- 이용 시간 : 평일 09:00~22:00(단, 18:00~22:00에는 한국어, 영어, 중국어로 상담)

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, www.klac.or.kr)

- 법률 구조 안내, 법률서식·상담사례 확인, 사이버상담 신청, 방문상담 예약 등
- 이용 시간 : 평일 09:00~11:50, 13:00~17:50 전화 상담